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

- 제243회 광진구조례규칙심의회 -
심 의 자 료

□ 일 시 : 2016. 1. 7.(목)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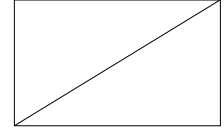


광진구조례규칙심의회

제243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 심의안건 : 총 1건(조례안 1)

연번	의안 번호	제출부서	심 의 안 건	비 고
1	72	보 건 위 생 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의안번호	제72호
의결 년월일	2016. 1. 7. (제243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보건소장 이희영
제출년월일	2016. 1.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영업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안전기준 등(안 제5조)
- 라. 지도감독 등 (안 제6조)
- 마. 행정처분 등 (안 제7조)
- 바. 부칙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제6호타목7)
 -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15. 12. 19. ~ 2016. 1. 7.)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완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허용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가운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자로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영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기준 등)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타목7)에 따라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장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 등을 준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재 등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처분 등) 영업자가 제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호의 제정 규정은 2016년 3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 보건위생과 보건7급 박준호

보건위생과장 고영석